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050호, 2025. 9. 16. 공포, 2026. 3. 17. 시행)됨에 따라,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신청·결정 및 신상변동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(안 제3조, 안 제6조),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 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”를 “참전유공자(배우자)등록신청서”로, “서류”를 “구분에 따른 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1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통 제출서류

가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

나.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1통

다. 사진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 1장

2. 개별 제출서류

가. 참전유공자: 6·25종군기장수여확인서,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 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나.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: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1통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병적증명서의 내용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주민등록표 등본
2. 병적증명서

제4조제2항 중 “참전사실”을 “참전사실여부”로 한다.

제5조제6항 중 “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”을 “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, 그 배우자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각각 “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: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: 주민등록표 등본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“참전사실 확인통보서”를 “참전사실여부 확인통보서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사망한”을 “사망하거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: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
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하고, 같은 뒤쪽 제1호 중 “변동된”을 “변동된 경우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(제5조제1항 관련)

1. 국가보훈등록증
가. 참전유공자의 경우

(앞면)

 국가보훈등록증

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

사 진

3.5cm×4.5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배경 없이 6개월 내에
촬영한 컬러사진)

(성명)
(주민등록번호)
(대상구분)
보훈번호:
(주소)
(경합 등록사항)

 (발행연월일)

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(뒷면)

 국가보훈부

▶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무료: 고궁·능원, 국공립 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
국공립 박물관·미술관, 국공립 수목원, 국공립 자연휴양림

QR

• 감면: 국공립 공연장(대관 공연은 제외), 국공립 공공체육시설

세부내용
QR 참조

※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
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※ 보훈상담센터 : ☎ 1577-0606
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

- 5 -

나.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

(앞면)



국가보훈등록증

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

사 진

3.5cm×4.5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배경 없이 6개월 내에
촬영한 컬러사진)

(성명)

(주민등록번호)

(대상구분)

보훈번호:

(주소)

(경합 등록사항)



(발행연월일)

국가보훈부장관

직인

(뒷면)



국가보훈부

- ※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
- 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- ※ 보훈상담센터 : ☎ 1577-0606
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

2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

 국가보훈등록증		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	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)	(성명)	(주민등록번호)	(대상구분)
	보훈번호:		
	(주소)		
	(경합 등록사항)		
	 (발행연월일) 국가보훈부장관 직인		

3.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

가.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.

- 1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2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3) 참전유공자 외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5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6)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
- 7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- 나. 앞면과 뒷면에 색변환 잉크, 미세선 문양 등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는다(제1호의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).
- 다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넣는다(제1호의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).

참전유공자(배우자) 등록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20일(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조회기간 제외)	
참전 유공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-	
	참전구분 [] 6·25 [] 월남 [] 6·25 및 월남	소속 [] 육군 [] 해군 [] 공군 [] 해병대 [] 경찰 [] 기타()		
	계급(직급)	병과		
	군번			
	입대(임용)일	제대(퇴직)일		
	복무(근무)기간			
주요 참전 내용	참전기간	참전지구 (전투명)	소속부대	
	~			
	~			
신청인	참전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-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
가족 사항 (배우자)	참전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비 고
			-	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(배우자)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
보훈지청장

귀하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 뒤쪽에 제출 서류 및 동의서가 있습니다.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병적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) 2. 6·25종군기장수여확인서,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3. 사진(3.5cm×4.5cm) 1장[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(JPG파일)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] 4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5.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6. 참전유공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: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 2. 병적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 동의함 [☐] 동의하지 않음 [☐]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관할 청장 (지청장)	→	등록결정 관할 청장 (지청장)	→	통보 관할 청장 (지청장)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

확인

담당	주무	과장	청장(지청장)
----	----	----	---------

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 및 배우자 확인서

발급번호			
참전유공자 (국가유공자)	대상구분	보훈번호	참전구분
	성명	생년월일	등록일자
확인 대상자	참전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
	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제출처

위 확인대상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직인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확인

우편번호	주소	전화번호	팩스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
			전자우편주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등록신청) ①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 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 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<u>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</u> 에 다음 각 호의 서 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가 제주특별 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를 말하며, 이하 “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”이라 한다)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		제3조(등록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참전유공자</u> (배우자)등록신청서----- 구 <u>분에 따른 서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1. 공통 제출서류 가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<u>증명서 1통</u> 나.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 함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 여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<u>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</u> <u>제출한다)</u> 1통 다. 사진(3.5센티미터×4.5센티 <u>미터)</u> 1장

1. 6·25종군기장수여확인서,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2. 사진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 1장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(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) ① (생략)

2. 개별 제출서류

가. 참전유공자: 6·25종군기장수여확인서,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나.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: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
<삭 제>

② -----

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-----
-----.

--.

1. 주민등록표 등본

2. 병적증명서

제4조(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
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
3호서식에 따른다.

제5조(국가보훈등록증 등) ① ~
⑤ (생략)

⑥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참전
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
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
식에 따른다.

제6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법 제
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
된 사람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
상의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나
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4
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
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
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
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
소가 변동(국내에서 주소가 변
동된 경우만 해당한다)된 경우
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
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
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-----
참전사실여부 -----
-----.

제5조(국가보훈등록증 등) ① ~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참전유
공자 또는 국가유공자, 그 배우
자임-----
-----.

제6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----
----- 참전유공자 또는 그
배우자-----

-----.

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③ (생략)

7.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: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② -----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: 주민등록표 등본

③ (현행과 같음)